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강도형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9819호, 2023.10.31. 공포, 2025. 5. 1. 시행)에 따라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는 마리나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마리나업 사무의 지방 이양·위임(제32조의6, 제35조 및 제35조의2 개정)

- 1) 마리나선박·보관계류 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·도지사로 이양함
- 2)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마리나업의 등록·관리 등과 관련된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정사무 권한을 삭제하여 법률에 따라 시·도지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
- 3) 시·도지사가 마리나업과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6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”를 “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해양수산부장관은”을 “시·도지사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해양수산부장관”을 “시·도지사”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한다.

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3호 중 “법 제41조”를 “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4호를 삭제한다.

3. 법 제16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협의

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포함한다)은”을 “포함한다) 또는 시·도지사는”으로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,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·신청·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·신청·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의6(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등) ① 법 제28조의9제4항 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2조의6(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1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또 는 마리나선박 보관·계류시 설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. 다만, 분양 또는 회 원 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 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까지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<u>그러하지 아니하다</u> .	2.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렇지 않다</u> .
가.·나. (생 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28조의9에 따라 마리나 선박이나 마리나선박 보관·계 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 을 하려는 등록사업자는 해양수	③ ----- ----- ----- -----

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
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
야 한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
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
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검토
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
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
출한 등록사업자에게 알려야 한
다.

⑤ 마리나선박이나 마리나선박
보관·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
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가
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을 변
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
장관에게 분양 또는 회원 모집
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
한다.

제3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해
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
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
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
다.

1. ~ 2. (생략)

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----
-----.

④ 시·도지사는 -----

-----.

⑤ -----

----- 시·도지사-----

----- 제출해야 -----.

-----.

제3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--
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<u>법 제16조제3항·제4항에 따른 협의</u>	3. <u>법 제16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협의</u>
4. ~ 13. (생략)	4. ~ 13. (현행과 같음)
14. <u>법 제28조의2에 따른 마린업의 등록·변경등록 및 등록 갱신의 접수</u>	<삭제>
15. <u>법 제28조의3에 따른 마린업 승계 신고의 수리</u>	<삭제>
16. <u>법 제28조의4에 따른 마린업 휴업·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</u>	<삭제>
17. <u>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마린업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 신고의 수리</u>	<삭제>
18. <u>법 제28조의6에 따른 요금 반환, 위반행위 중지,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명령</u>	<삭제>
19. <u>법 제28조의7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및 영업 정지 명령</u>	<삭제>
19의2. ~ 22. (생략)	19의2. ~ 22. (현행과 같음)
23. <u>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</u>	23. <u>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</u> ----- -----
24. <u>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</u>	<삭제>

접수

② (생 략)

제3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정보의 처리) 해양수산부장관
(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
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
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
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
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
행령」 제18조제2호의 범죄경
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
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
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
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
수 있다.

1. ~ 4.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정보의 처리) -----

-- 포함한다) 또는 시·도지사는

-----.

1. ~ 4. (생 략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275